

● **환경부령 제1154호**

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(를)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25년 02월 07일

환경부장관 인

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
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2(기상전문기관의 운영 등) ①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상전문기관(이하 “기상전문기관”이라 한다)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관측시설 장애 발생 여부 상시 감시
 2. 관측시설 장애 발생 시 대응
 3. 기상관측자료 이상 여부 상시 감시
 4. 기상관측자료 품질관리
 5. 기상측기 예비품 관리
 6. 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관측기관의 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
 7. 그 밖에 소관 관측시설의 효율적인 구축 및 관리를 위하여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- ② 기상청장은 기상전문기관에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운영계획 및 전년도의 운영 추진실적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- ③ 기상청장은 법 제8조의3제4항에 따라 기상전문기관이 적절하게 운용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해당 기관에 출입·조사할 수 있다.

제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말한다]”를 “말한다. 이하 이 조 제6항 및 제9항에서 같다]”로 한다.

제6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담당 공무원은”을 “담당자는”으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사업자등록증”을 “사업자등록증명(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. 이하 같다)”으로, “서류의 사본을”을 “서류를”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사업자등록증명

제6조의3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제11항 및 제12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12항(중전의 제11항) 중 “제10항”을 “제11항”으로 한다.

-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4항 및 제7항에 따른 형식승인서 또는 변경승인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6서식의 형식승인서·변경승인서 재발급 신청서에 형식승인서 또는 변경승인서를 첨부(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)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1. 승인서를 잃어버린 경우
2. 승인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

3. 승인서의 기재사항 중 신청인에 관한 사항(전화번호는 제외한다)이 변경된 경우

⑩ 제9항제3호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자는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. 다만,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.

1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)

2. 사업자등록증명

제6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해당 서류의 사본을” 을 “해당 서류 또는 그 사본을” 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사업자등록증명

제6조의5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.

2. 형식승인 분야

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사업자등록증” 을 “사업자등록증명” 으로, “서류의 사본을” 을 “서류를” 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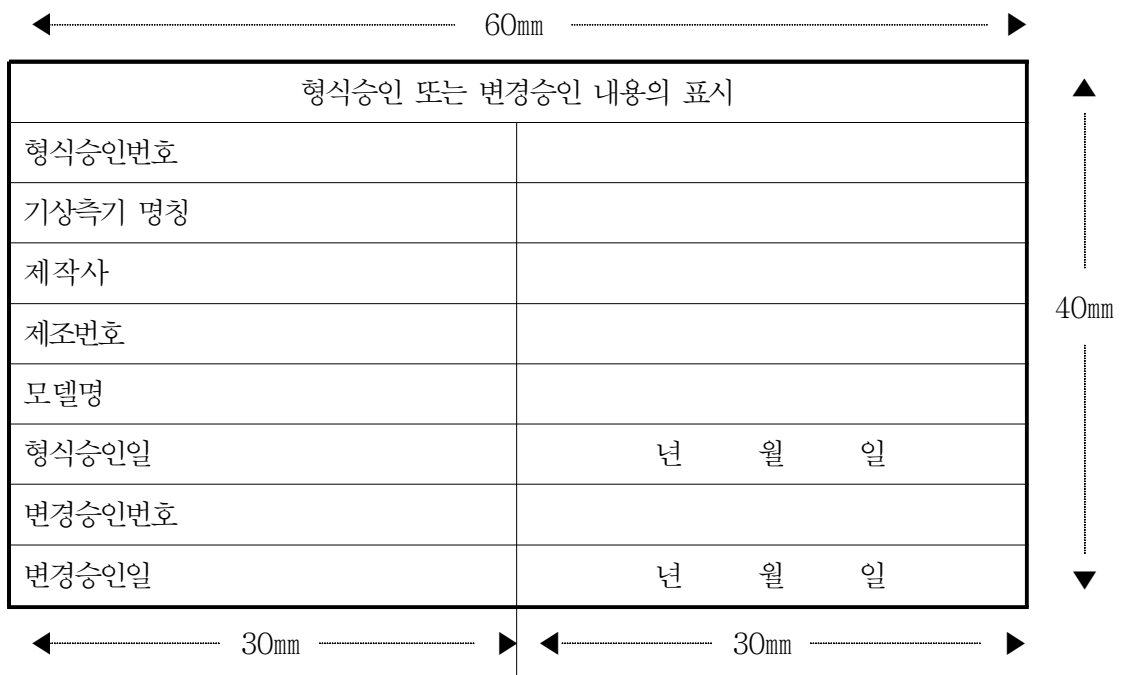
2. 사업자등록증명

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(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)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6과 같다.

별표 3의3 제목 중 “(제6조의3제10항 관련)” 을 “(제6조의3제11항 관련)” 으로 하고, 같은 표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 내용의 표시



비고: 소형 기상측기인 경우 표시의 크기를 변경할 수 있다.

별표 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별지 제1호서식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“담당 공무원이” 를 “담당자가” 로, “사업자등록증” 을 “사업자등록증명” 으로, “해당 서류의 사본을” 을 “해당 서류를” 로 한다.

담당자 확인사항	1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 2. 사업자등록증명(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)
-------------	---

별지 제1호의6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지 제1호의7서식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중 “사업자등록증” 을 “사업자등록증명(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)” 으로 하고, 같은 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“해당 서류의 사본을” 을 “해당 서류 또는 그 사본을” 로 한다.

별지 제3호의3서식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중 “사업자등록증” 을 “사업자등록증명(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)” 으로 하고, 같은 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“사업자등록증” 을 “사업자등록증명” 으로, “해당 서류의 사본을” 을 “해당 서류를” 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5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형식승인대행기관의 변경지정에 관한 적용례) 제6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형식승인 분야를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■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[별표 6]

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(제12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,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.

나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다.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(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
라.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.

- 1)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2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경미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
- 3)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사업을 모범적으로 해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처분기준		
		1차	2차	3차 이상
가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	법 제15조 제1항제1호	지정 취소		
나.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지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	법 제15조 제1항제2호			
1) 법 제13조에 따른 검정 기준을 위반하여 검정업무를 대행한 경우		업무정지 2개월	업무정지 4개월	지정 취소

2)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		업무정지 2개월	업무정지 4개월	지정 취소
3)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개선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		업무정지 2개월	업무정지 4개월	지정 취소
4) 법 제22조의2에 따른 검정수수료 기준을 위반하여 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검정업무를 대행한 경우		업무정지 2개월	업무정지 4개월	지정 취소

■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[별지 제1호의6서식]

형식승인서
 변경승인서

재발급 신청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형식승인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5일
--------	-----	------	----

신청인	상호(사업장 명칭)	법인등록번호(사업자등록번호)
	대표자 성명	전화번호
	사업장 주소	

신청 내용	기상측기 명칭	
	제작사	제조 연월일
	제조번호 · 센서부 : · 지시·기록부 :	측정범위 · 최소 : · 최대 :
	모델(규격)	
	재발급 신청 사유 [] 분실, [] 훼손, [] 신청인 관련사항 변경	

「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」 제6조의3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형식승인서 변경승인서 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(서명 또는 인)

신청인

기상청장
형식승인대행기관의 장 귀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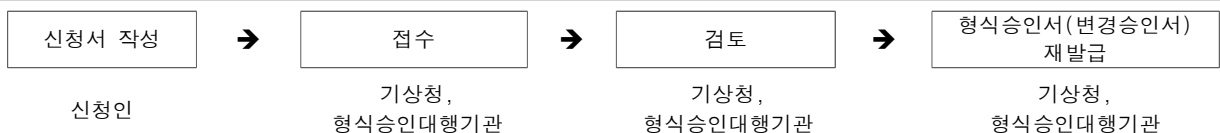
첨부서류	「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」 제4항 및 제7항에 따른 형식승인서 또는 변경승인서(승인서를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합니다)	수수료 없음
담당자 확인사항 (승인서의 기재사항 중 신청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)	1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 2. 사업자등록증명(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)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자가 위의 담당자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처리절차



◇ **개정이유 및 주요내용**

기상청장은 관측시설의 효율적인 구축 및 관리를 위하여 기상전문기관으로 한국 기상산업기술원을 지정하고, 관측기관의 장이 소관 관측시설의 구축 및 관리 업무를 기상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, 검정대행기관의 위반행위별 행정 처분 세부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기상관측표준화법」이 개정(법률 제20226호, 2024. 2. 6. 공포, 2025. 2. 7. 시행)됨에 따라, 기상전문기관은 관측시설 장애 발생 여부 및 기상관측자료 이상 여부의 상시 감시,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, 기상측기의 예비품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, 검정대행기관이 검정기준을 위반하여 검정업무를 대행하거나 지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2개월, 2차 위반 시 업무정지 4개월, 3차 이상 위반 시 지정 취소를 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,

기상측기 형식승인서의 기재사항 중 신청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형식승인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<환경부 제공>